

보상금등 지급 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희생자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	
	(한자)		
	등록기준지		
청구인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	
	(한자)		
	주소		
	희생자와의 관계	전화번호	
	의		
	계좌번호	금융기관명	
결정 결과	지급액	결정일	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.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.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.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
------	--

유의사항

청구인이 보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※ 청구인이 보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「행정심판법」 및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“희생자”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란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.
- “희생자”란 중 “등록기준지”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, 제적부만 있는 사람은 제적부상 본적을 기재합니다. 다만,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- “청구인”란에는 희생자가 청구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, 상속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.